

2024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 영 매 뉴 얼

2024.4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 * 청년이 바라는 취업서비스[중기중앙회, '21.4월]:①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 (73.7%),② 구활지원금·생활비지원(59%),③ 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52.9%) 順
-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 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청년 일경험 주요 내용

•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지원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방식)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청년, 기업 등에 보조금 지급
- □ (목적)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일경험 정의) 청년이 취·창업 전 미리 직무 관련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또는 직무역 량 강화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 □ (참여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 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 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2 기관개요 및 지원내용

2.1 기관 역할 및 자격요건

□ 운영기관 역할 및 자격요건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관리
-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선발 및 일경험 프로그램 매칭

연번	내용					
신청 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제한 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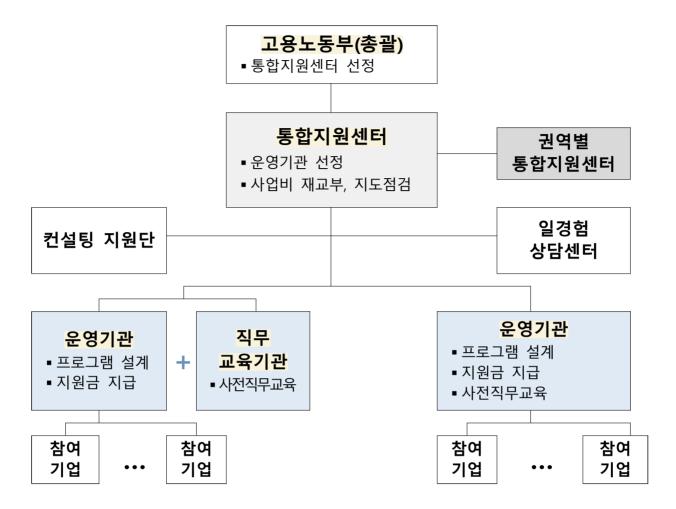
□ 직무교육기관 역할 및 자격요건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사전직무교육 실시
- 사전 직무교육은 ①운영기관(직접 수행) ②컨소시엄 기관을 활용하여 운영

연번	내용					
신청 자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제한 사항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지워기관 체계도



□ 사업 추진 절차





2.2 유형별 지원내용

□ 프로그램 유형

인턴	년형	<u>프로</u> 적	 트형	ESG지원형
직무교육	프로그램	직무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상이
(40시간 이상)	(4~20주 내외)	(40시간 이상)	(8주 내외)	

-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 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 (ESG지원형)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유형별 지원 규모

○ (인턴형)

★표시는 '24년 신설

구분	지급대상	명칭	지급기준		TI의그애
TE			인원	기간	지원금액
직무교육	교육기관	지원금	1인	1시간	1만원
当十些书	청년	수당★	1인	1주	3.75만원
	기업	지원금	1인	1주	5만원
일경험	멘토	수당★	1인(멘토)	1주	3.75만원
201	청년	수당	1인	1주	35만원
	8년	체류지원비★	1인	1주	5만원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비	1인	_	60만원

예시) 목표인원 100명, 직무교육 40시간, 일경험 8주인 경우

1. 직무교육비 : 10,000원 * 100명 * 40시간 = 40,000,000원

2. 운영기관운영비: 600,000원 * 100명 = 60,000,000원

3. 보상금: 393,000,000원

- 기업지원금 : 50,000원 * 100명 * 8주 = 40,000,000원

- 멘토비 : 37,500원 * 10명 * 8주 = 3,000,000원

- 직무교육수당 : 37,500원 * 100명 * 1주 = 3,750,000원

- 체류지원비 : 50,000원 * 100명 * 8주 = 40,000,000원

- 청년지원금* : 350,000원 * 100명 * 8주 = 280,000,000원

* 주 25시간 기준